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9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찾아가는 복지 · 맞춤형 복지 실시로 사람 중심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 외국인을 총괄 지원할 부서 신설로 행정 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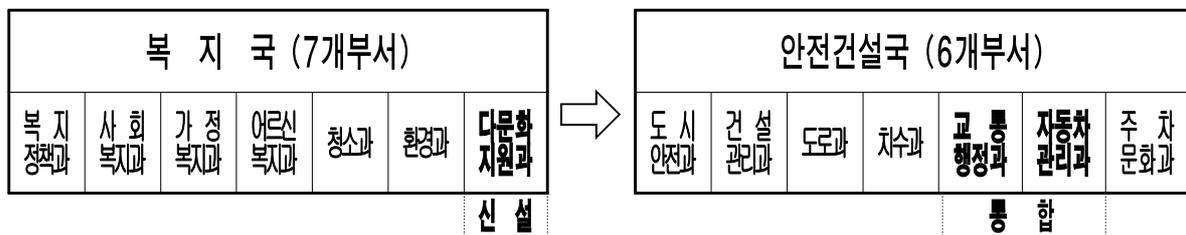
- 가. 다문화가족 · 외국인 지원 전담 부서인 ‘다문화지원과’ 신설
- 나.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
- 다. 동 업무에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 관리 기능’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고, 안전건설국의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로 통합하며, 동주민센터 직무에 저소득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추가하였음.



- 서울시 통계자료¹⁾ (2015.1.1.기준)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66,952명으로 서울시 거주외국인(457,806명)의 14.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²⁾도 10,861명으로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74,629명)의 14.5%를 차지하여 자치구 중 최고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미 우리사회의 일원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1) 서울 통계포털 (<http://stat.seoul.go.kr>)

2)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지원과’ 신설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붙임)

-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의 통합은 전체 행정기구 증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2012.12.27.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자동차 등록업무, 번호판 영치업무, 교통사법경찰 업무 등을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로 분장 하였는데, 3년 6개월여 만에 원래대로 환원하는 불가피한 행정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부서 신설 또는 폐지 등의 조직 개편 시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업무성과를 분석하는 등 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연번	자치구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비고
총계		457,806	74,629	
1	종로구	12,711	1,288	
2	중구	12,669	1,321	
3	용산구	20,512	1,998	
4	성동구	13,382	2,174	
5	광진구	22,697	3,146	
6	동대문구	18,795	2,740	
7	중랑구	8,924	2,419	
8	성북구	13,747	2,015	
9	강북구	6,743	1,901	
10	도봉구	4,396	1,332	
11	노원구	6,660	1,670	
12	은평구	9,284	2,494	
13	서대문구	14,445	1,563	
14	마포구	16,022	1,981	
15	양천구	9,772	2,468	
16	강서구	13,183	3,446	
17	구로구	53,191	8,602	
18	금천구	32,974	5,438	
19	영등포구	66,952	10,861	
20	동작구	19,664	2,858	
21	관악구	32,996	5,544	
22	서초구	10,667	1,085	
23	강남구	12,915	1,387	
24	송파구	14,838	2,725	
25	강동구	9,667	2,173	

※ 출처 : 서울통계포털(2015. 1. 1. 기준)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